

조 교 규 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조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구분) 조교는 사무조교,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로 구분한다.

제 3조(담당업무) ① 사무조교와 장학조교는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강의·학생지도·실습·실기 및 행정업무 등을 보좌한다.

② 연구조교는 교수의 연구·강의·학생지도·실습·실기 및 기타 학술활동을 보조한다.

제 4조(자격) ① 사무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② 장학조교의 자격은 본교 각 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이라 한다) 정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.

③ 연구조교의 자격은 본교 일반 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이라 한다) 정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5조(발령절차) ① 조교발령은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매학기 개강 전까지 임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무조교는 학기 중에 임면할 수 있다.

② 사무조교의 채용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조교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부로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조(임기 및 정원) ①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사무조교는 연속하여 임용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. 교비장학금을 수혜 받는 조교의 근무기간은 통산 발령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.

② 조교의 정원은 총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.

제 7조(구비서류) ① 조교로 신규발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최종 학위증명서
3. 추천서
4. 계약서(사무조교에 한함)
5. 기타 해당부서장이 요구하는 서류

② 재계약 하는 조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조교 추천서만 제출한다.

제 8조(근무시간) ①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되, 부서 업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무조교는 주 5일, 장학조교 및 연구조교는 주 3일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부서장은 사무조교에게 최초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부여하되, 1년의 8할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단위로 1일씩, 1년의 8할 이상 근무자는 연간 15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한다.

④ 제 3항 이외의 조교에게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 9조(준수사항)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2.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3. 학교의 시설, 장비,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4.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5. 소속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 10조(해임) ① 조교는 발령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퇴직한다.

- ② 발령기간 중이라도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- ③ 부적절한 조교임용의 경우 해당 조교를 즉시 해임하고, 책임 있는 관련자는 정관 또는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.

제 11조(처우) ① 사무조교의 처우는 월정액으로 급여를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.

- ② 장학조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, 연구조교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.
-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매월 일정액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2조(직명) 조교에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발령직명을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.

제 13조(퇴직금) 사무조교 중 1년 이상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.

제 14조(휴직, 징계) 조교는 계약기간중 휴직을 할 수 없으며,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 법인 고운학원 정관,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5조(출장 및 강사료) ① 조교가 제8조의 근무시간외에 본교 또는 타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하에 주당 6시간까지 허용한다.

② <삭제>

제 16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①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폐지)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사무조교규정, 장학조교, 연구박사 규정은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게는 임기 만료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며, 2011년

3월 1일 이후 재임용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